

정보공개서 등록 번 호:201601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02.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3.06.

https://황장군.com/

황장군 정보공개서

(주)가우정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가우정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 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 에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홍덕길 33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부 전화 : 055-945-8100

팩스번호: 055-945-810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1 기메닐브이이바드왕왕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3		
	3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황장군	황장군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홍덕길 33			3
/x/710ИПГ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 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가우정 푸 드	2014.07.16.	2014.07.16.	신재복	055-945-8100	055-945-8101
	법인 등록 번호	230111-0225142	사업	자 등록 번호	610-86-30789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75		홍덕길 33	
대표이사	신재복	황장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신재복	055-945-8100	055-945-8101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き	영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홍	흥덕길 33	
사내이사	구기산	황장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신재복	055-945-8100	055-945-8101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홍덕길 33			
	l i		Ų	88 금포 기장군 금정된 중	5극일 33	
비상무이사	이승한	황장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5억을 33 대표팩스번호	
비상무이사	이승한	황장군				
비상무이사 관 계	이승한 이름/상호	황장군 영업표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자 신재복	대표전화번호 055-945-8100	대표팩스번호 055-945-8101	
			대표자 신재복	대표전화번호 055-945-8100 주 소	대표팩스번호 055-945-810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cdot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cdot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황장군]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용	추가 설명
명 칭	황장군	

상 호	황장군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지역을 사용하여 가맹점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 황 장 군	등록 번호: 제 45-0042526 호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 본총 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8,641,693	5,455,429	3,186,264	18,328,161	2,422,982	2,251,303
2023년	9,352,516	3,851,237	5,501,279	18,894,217	2,174,288	2,026,507
2024년	9,476,605	2,928,914	6,547,691	16,712,082	1,306,403	1,046,411

그 근거 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 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T E	5	다 녹ㅠ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신재복	이사	2014.07.16 ~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구기산	아사	2023.12.06 ~ 현재	이사	운영지원
관련임원	노은영	감사	2021.07.28 ~ 현재	감사	회계 / 감사
	이승한	이사	2017.12.04 ~ 현재	이사	노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 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1	4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사용기간)
황장군	가맹점 사용	2012.11.29.	4500425260000	㈜가우정푸드	2023.11.29.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 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6년 3월 11일

2. 황장군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가우정푸드	황장군	오송균	2016.02. ~ 2017.04.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33, 3 층
(주)가우정푸드	황장군	오송균	2017.04 ~ 2023.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홍덕길
(주)가우정푸드	황장군	신재복	2023.11 ~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홍덕길

3. 황장군 업종

영업표지	업종		
황장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소고기(갈비탕, 갈비찜)	

.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황장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 42 636							L 11.711)		
지역		2022.12.31.			2023.12.31.	•	2024.12.31.		
시크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	18	-	17	17	-	16	16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12	12	-	11	11	-	10	10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울산	1	1	1	1	1	i	1	1	-
세종	-	-	-	-	-	-	-	-	-
경기			ı			i			-
강원	-	-	1	ı	-	-	1	-	-
충북	-	-	-	i	-	-	ı	-	-
충남	-	-	ı	i	-	i	ı	-	-
전북	-	-	-	ı	-	-	-	-	-
전남	-	-	ı	i	-	i	ı	-	-
경 북	5	5	-	5	5	-	5	5	-
경남	-	-	-	-	-	-	-	-	-

제주

5.바로 전 3년간 황장군 가맹점 수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17	1	0	0	0	18
2023년	18	0	1	0	0	17
2024년	17	0	1	0	1	16

6. 황장군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황장군 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황장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천원 / 부가세 미포함)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 \ \ \ \ \ \ \	
	2024년 말			<u> </u>				
지역	가맹점 수	연간 평	균매출액	연간 평균미	H출액(상한)	연간 평균미	배출액(하한)	비고
	Н 0	매출액	3.3㎡당	상한	3.3㎡당	하한	3.3㎡당	
전체	16	1,207,828	11,381	2,534,858	31,686	90,888	606	
서울	-	-	-	-	-	-	-	-
부산	1	-	-	-	-	-	-	-
대구	10	1,179,588	11,585	2,376,330	21,863	268,433	3,677	
인천	-	-	-	-	-	-	-	
광주	1	-	-	-	-	-	-	
대전	-	-	-	-	-	-	-	
울산	1	-	-	-	-	-	-	
세종	-	-	1	-	1	-	-	
경기		-	-	-	-	-	-	
강원	1	1	1	-	1	1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5	1,188,862	10,249	2,534,858	31,686	90,888	606	

경남	-	-	-	-	-		
제주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황장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황장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6	2,58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황장군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황장군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9,408]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의 8.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그ㅂ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	l용 (단위: 천	비고	
T E	구면	/ 1 -	합계	가맹 본 부	가맹점	U 7
합계			84	84	0	
광고	인터넷 등	비공개				
판촉	해당없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 원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	-------	----	------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33	055-942-5821
------------	--------------------	--------------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농협은행 계좌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		
		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농협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계좌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설시	대리인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필요서류	네디인 개설시	② 사업주와 대리인 각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험제도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 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황장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1)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2) 보증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3)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비예치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 **대형 매장형** (231 ㎡(70 평) 이상)

(단위:천원 / 부가세 포함)

그ㅂ	그 애	지급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T E	구 분 금 액 '' 기한		민준조건	비고
		계약 1,000 체결일	영업 개시 전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맹비	가맹비 11,000		계약 해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 ⊑	2 200	계약 교육 시작 1 일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2,200	체결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나) 소형 매장형 (231 ㎡(70 평) 미만)

(단위:천원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T E	= 4	기한	5525	비고
		계약	영업 개시 전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맹비	가맹비 5.500	게ㅋ 체결일	계약 해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세글르	게극에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
TE 포디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대형 매장형** (231 ㎡(70 평 이상)

(단위:천원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T E	百叫	시 시	비고
			가맹금 및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계약이행	20,000	계약 체결일	1.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 공제 후 상호,서비스표 등 당
보증금	20,000	/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 후 정산
			2.별도의 이자가 없음

나) **소형 매장형** (231 ㎡(70 평 미만)

(단위:천원 / 부가세 포함)

_ _	그 애	TI그기당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TE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비고
			가맹금 및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계약이행	10,000	계약 체결일	1.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 공제 후 상호,서비스표 등 당
보증금	10,000	게그 제글글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 후 정산
			2.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천원,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T E	소형 매장형 (231 ㎡(70 평) 미만	대형 매장형 (231 ㎡(70 평) 이상		
합계	15,500	33,200		
가맹비	5,500	11,000		
교육비	없음	2,200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부가세 없음	20,000 /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의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품 목	지급대상	금 액	3.3 ㎡당 금액	지급기한	비고
총계		204,600	2,046		330㎡기준
간판 및 사인물	가맹본부	10,000	100	계약시 협의	
인테리어	가맹본부	165,000	1,650	계약시 협의	
기타 물품	가맹본부	600	6	계약시 협의	
기기 및 집기		27,000	270	계약시 업의	
오픈행사비	가맹본부	2,000	20	계약시 협의	
초도물품	가맹본부	13,000	130	물품공급 1일전	

- * 테라스 설치비, 전기증설.철거비, 화장실, 냉난방기, 도시가스설치, 가스온수기, 소방설비, 어닝, 전자제품, 오픈행사 등은 별도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관련, 당사의 감리 대가로 3.3 ㎡ 기준으로 110 천원(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
가맹희망자	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
	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
	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피성년후견인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 원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해당 없음	-				

1) 비용 부담 (이어서) 구분		지급	704	구! 그 ㅋ!ㅎ!	반환	반환될 수	비
十 ē	1 12		금액	지급기한	조건	없는 사유	고
	수시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개점 이후 교육비 -	교육		청구				
	특별	가맹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후	
	교육	본부	협의 하여 산정	교학결시 7 일전	1 일전 취소	반환 불가	
		亡丁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	/ 일신	T 발선 위조	인선 출기	
	재교육		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가맹				판촉 활동	
판촉 분	담금	가당 본부	행사별로 분담			실시 후	
		亡丁		V O i	ŧ⊦ ¬	반환 불가	
		7104		V-9 7	31	광고 활동	
광고 분	담금	가맹 본부	광고 시 분담액 결정			실시 후	
						반환 불가	
간판류 임	사료		해당 없음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영업표지 변		ᅵ 미정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따른 간판변	.경 비용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040471041	JTL-7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해당없음	그레 버스이크			
시설, 각종 교체. 보수		미정	실사 후 상호협의 하여 결정	교체, 보수완료 5 일전 까지			
				o ee man			VII-
점포횐		미정	가맹본부분담비용을				1.
개선비용			제외한 나머지				참고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연20%	지급기일의			
지연0	ITL	가맹 본부		다음날부터			
\\\\\\\\\\\\\\\\\\\\\\\\\\\\\\\\\\\\\\	 ^ [∟ I	월 계속 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	지급하는			
			과 했을 시 부담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 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 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 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다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ᄞ고
갱신비	\1,320,000	계약연장(갱신) 후	반환되지 않음	가맹사업을 위한	소형매장형
경인미	(부가세 포함)	3 일 이내	한한되지 않음	소멸성비용	제외

*상기의 비용은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계약 갱신 이후 반환 되지 않습니다. **단. 소형매장형은 갱신비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상권분석 재조사 등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 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출원신청 후 등록된 경우에 한함)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황장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는 2 개월 전에 당사에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동의를 받은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에 대해 모든 영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교육비로 일금이백이십만원(2,200,000)정<부가세 포함>과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즉시 가맹사업의 운영에 사용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이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위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1 일당 일금삼십만원(₩300,000)정을 그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황장군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어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

원

- 가)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어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황장군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황장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황장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 2 제 2 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1 차 위반 : 구두경고	
갈비탕, 갈비찜, 냉면, 만두 등	당사의 승인 받지 않은	2차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공급하는 메뉴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3차 위반 : 물류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 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황장군의 타가맹점사업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1 차 위반:구두경고 2 차 위반:서면 시정 요구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물품	제품은 판매불가	3 차 위반:물류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가격 결정에 대해 지역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갈비탕	4471011 rrl 71		당사와 귀하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갈비찜	상권에 따라	공문발송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권장 소비자 가격을
냉면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통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만두	, 사합니다.		얻어야 한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이라 어조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 본부	계열회사
갈비탕 · 갈비찜 전문점	およつ	해당 없음
냉면 전문점	황장군	에닝 없금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 일 경우	특수상권 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0.5 km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통지 후 3 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황장군'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황장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홈쇼핑	현대홈쇼핑	www.thehyundai.com	셰프 송훈 갈비찜	원육 차별화 브랜드 차별화
홈앤쇼핑		www.hnsmall.com	황장군 일품 왕갈비탕 골드라벨	원육 차별화
온라인				
전화권유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34.24%	0.25%	0%	65.51%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황장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알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 400 D 00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D-16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D-10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15일 이내
예→B, 아니오→A	110일 이대
순 서	기간
E 71	(계약만료알 D-day)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490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월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 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2항 각호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7조 28 극호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	
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3항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 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 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1~2 항	2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5 조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 조 1 항	각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 조 2~4 항	호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조 5 항	및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9 항	3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는 경우	23 조	1
품질검사에 2 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조
사업주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 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 조 2~3 항	항 1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1 호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 조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 조 2~5 항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25 조 21	호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 유	관련 계약조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니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혹은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정계약서(안) 작성 \rightarrow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rightarrow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귀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7.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양도 전 잔존채무의 이행완료 할 것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	-----------	-------	----	----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이어서)

상속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서면으로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15 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직계존비속에 한함
대리행사	발생시 협의	-	-	-
업무위탁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위탁자 면담 포함,10 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황장군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갈비탕, 갈비찜 등 고기와 관련된 업종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황장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11 시 ~ 오후 10 시	연중 무휴	설 및 추석은 재량 휴무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연속하여 4일 이상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 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9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수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서비스 및 점포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서비스 및 관리 확인 →가맹점 방문	수시	
	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확인 및 서명 →완료	ナハ	
게프이 표조하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١١ ٨	
제품의 표준화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황장군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비다 저귀	비고	
<u>⊤</u> ⊑	10 10 10 10 11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nhr.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1/N(N:가맹점 수)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1/N(N:가맹점 수)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해당없음					

주)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의 두가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① 사전 약정

당사 및 귀하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 합니다.

② 사전 동의

당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주) 위 1항 및 2항의 절차를 거친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가 계획, 주관하여 당사가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에 대한 판매, 사용 등의 공동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당사에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계약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황장군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계약위반으로 당사가 2 회이상의 시정조치에도 시정이 안될 시에는 당사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 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천만원을 한도로 1 일 당 오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배상합니다.
- 위의 사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	즉시	IV.가맹점
기 0의 0시 단의	- 인터넷 홈페이지	7	사업자의 부담
4 =1 4+5+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ᄌᆡ	1. 영업개시
1 차 상담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즉시	이전 부담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계약서 사전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 일 전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2 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3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4 일	
오픈	오픈리허설 (담당운영 과장 판단 후 오픈 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사유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 일 성 을 유 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가맹본부 부담	-인테리어 공 사 비용(장 비,집 기의 교 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비용항목	되는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 관 하 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지급절차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시타일사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 약 이
지급절차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1151010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55) 945-8100

3. 경영활동 자문 (이어서)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55) 945-8100

 $^{^{\}sf L}$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황장군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황장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시간	교육 방식	교육 장소	교육내용	교육이수 기한	비고
조리	40	하자 / 시스	본사 및	위생관리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필수
교육	시간	현장 / 실습	가맹점	주방실습	1 개월내	교육
홀	40	집체 / 이론	본사 및	점포관리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선택
교육	시간	현장 / 실습	가맹점	홀 실습	1 개월내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황장군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 집단	THH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	개별 형이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	협의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황장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전교육	7일 내외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기버하이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특별 교육	개별협의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필요시 실시

제국 Q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재교육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또는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 (055-945-81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i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 원

별첨 2) 직전 3 개년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 원

정보공개서, 계약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수령 및 비밀유지 확약서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 (주)가우정푸드 』의 『 황장군 』 정보공개서, 계약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라 한다)를 정히 제공받았으며, 본 정보공개서는 귀사와의 가맹계약과 관련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외에 정보공개서 내용 중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복사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유출로 인하여 귀사에 피해가 발생할 시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등 그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문서

위 목차에 대한 정보공개서, 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문서를 제공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20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장소:

정보공개서 수 령 자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수령자 주 소:

수령자 연 락 처:

주식회사 가우정푸드

